



□ 또한, 그간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현장조사·상담 등은 대부분 민간 기관(68개 중 65개 민간기관)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였는데, 민간 인력이 현장 조사 및 아동과 학대 행위자 분리조치 등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.

□ 올해 10월부터 개편되는 아동보호체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【지자체가 지역 아동보호의 핵심 주체(이하 컨트롤타워)】

아동학대,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, 상담·가정환경조사, 보호계획 수립, 양육상황 점검,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

○ 요보호아동\*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(소위원회)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가정위탁, 시설 입소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, 원가족 복귀 등 보호 종결을 심의 및 결정하여 재학대 발생 등을 최대한 방지하게 된다.

\*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보호자가 부재하거나, 아동학대 등으로 보호자가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
-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개정(10.1 시행)을 통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(10명→15명), 의사·법조인·교사 등 아동보호 전문 인력의 필수적 참여, 소위원회 구성·운영 등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.

○ 시군구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이 배치되어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학대 조사와 요보호아동의 보호 등에 있어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- 특히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, 건강검진, 심리검사를 수행하여 개별보호·관리계획을 수립하고,

- 보호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가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다.
- 또한, 아동의 보호 종결 후에도 다시 보호 체계로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아동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사후관리까지 실시한다.

### 【아동학대조사 공공화】

아동학대 신고 접수(112·지자체) 이후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학대 여부 조사, 필요 시 응급조치(분리보호 등), 학대 여부 판단 및 피해 아동 보호 계획 수립

- 아동학대 조사, 상담 등 초기 대응 업무를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.
  - \* '20년 10월 1일 기준 전국 10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되며, '21년까지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치 추진
- 112 및 지자체(시·군·구청)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학대 여부를 즉시 조사하고,
-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, 교사, 주변인 등에 대해 학대 조사를 실시한 후 아동학대 여부, 개입 방향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, 피해아동보호 계획을 수립한다.
- 필요 시 지자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(소위원회)의 심의를 거쳐 아동을 시설 또는 위탁 가정에 분리하여 보호한다.
- 또한, 응급조치\*나 임시조치 신청 등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'아동학대처벌법')상의 대응 조치에 대하여도 책임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해지며,
  - \* 현장에서 즉시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범죄행위의 제지, 행위자 격리, 아동의 보호시설·의료기관 인도 등

- 특히,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접수 직후의 현장조사 외에도, 피해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행정조사로써 학대행위자에게 출석·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.
- 한편, 기존에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기관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에 집중하게 된다.
  - 이에 따라, 전담공무원의 피해아동 보호계획에 따라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, 심리치료, 안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사례별 필요 자원을 연계하여 효과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.
    - \* 사례관리는 학대 재발의 위험 사유가 감소하고, 일정 기간 안전한 상태가 유지될 때까지 지속 수행
- 학대 조사의 공공화 초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강화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-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“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아동보호의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,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- 또한, 법무부 이상갑 인권국장은 “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며, 나아가 아동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힘쓰겠다.”라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2020년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지역  
2. 아동보호전담요원 개요

**붙임 1**

**2020년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 지역**

※4차 추경(9.22)으로 인한 53명 배치지역은 이후 확정

구분	시군구								
<p><b>학대전담공무원 + 아동보호 전담요원</b></p> <p>(단위 : 개 / 명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<td>구분</td><td>배치</td></tr> <tr><td>시군구</td><td>104</td></tr> <tr><td>학대공무원</td><td>270</td></tr> <tr><td>전담요원</td><td>181</td></tr> </table>	구분	배치	시군구	104	학대공무원	270	전담요원	181	<p>서울(22,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) <b>부산(14,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)</b> <b>대구(2, 달서구 달성군)</b> <b>인천(2, 남동구 옹진군)</b> <b>광주(2, 광산구 북구)</b> <b>대전(1, 서구)</b> <b>울산(4,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)</b> <b>세종(1, 세종시)</b> <b>경기(7, 군포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여주시 의왕시 화성시)</b> <b>강원(8,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인제군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)</b> <b>충북(5, 단양군 옥천군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)</b> <b>충남(8,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천안시 태안군 홍성군)</b> <b>전북(6, 남원시 무주군 완주군 익산시 장수군 정읍시)</b> <b>전남(8, 구례군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영암군 장흥군 함평군)</b> <b>경북(4, 경주시 구미시 의성군 포항시)</b> <b>경남(10, 거제시 거창군 김해시 남해군 사천시 진주시 창원시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)</b></p>
구분	배치								
시군구	104								
학대공무원	270								
전담요원	181								
<p><b>아동보호 전담요원</b></p> <p>(단위 : 개 / 명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<td>구분</td><td>배치</td></tr> <tr><td>시군구</td><td>72</td></tr> <tr><td>학대공무원</td><td>0</td></tr> <tr><td>전담요원</td><td>97</td></tr> </table>	구분	배치	시군구	72	학대공무원	0	전담요원	97	<p>서울(3, 마포구 용산구 중구) <b>대구(6,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)</b> <b>인천(3, 계양구 미추홀구 부평구)</b> <b>광주(1, 동구)</b> <b>대전(2, 대덕구 유성구)</b> <b>경기(18,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포천시 하남시)</b> <b>강원(8,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원주시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화천군)</b> <b>충북(3, 괴산군 보은군 진천군)</b> <b>충남(3, 금산군 논산시 청양군)</b> <b>전북(2, 군산시 전주시)</b> <b>전남(7, 곡성군 광양시 담양군 여수시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)</b> <b>경북(10, 경산시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진군 청도군 청송군)</b> <b>경남(5, 고성군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통영시)</b> <b>제주(1, 제주도)</b></p>
구분	배치								
시군구	72								
학대공무원	0								
전담요원	97								
<p><b>학대전담공무원</b> (단위 : 개 / 명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<td>구분</td><td>배치</td></tr> <tr><td>시군구</td><td>14</td></tr> <tr><td>학대공무원</td><td>20</td></tr> <tr><td>전담요원</td><td>0</td></tr> </table>	구분	배치	시군구	14	학대공무원	20	전담요원	0	<p><b>부산(1, 중구)</b> <b>강원(1, 태백시)</b> <b>충북(3, 음성군 영동군 증평군)</b> <b>충남(3, 공주시 아산시 예산군)</b> <b>전북(1, 김제시)</b> <b>전남(2, 신안군 화순군)</b> <b>경북(3, 봉화군 영천시, 칠곡군)</b></p>
구분	배치								
시군구	14								
학대공무원	20								
전담요원	0								

## 참고 2

## 아동보호전담요원 개요

### □ 개요

- (배경)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아동보호의 단계별로 업무수행 주체와 역할이 법제화되어 있으나 현실에서 작동 미흡
  - \*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상담·가정환경조사 등, 보호계획 수립, 양육상황 점검, 사후관리 등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('16.3. 개정, '18.3. 시행)
  - \*\* 시군구당 보호대상아동(평균 196명) 담당 인력은 평균 1.2명('19.4월)
- (대상)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의 보호대상아동
  -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·빈곤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아동
- (배치 지역) '20년 전국 176개 시군구\*, 총 281명 배치 예정
  - \* 4차 추경 편성에 따라 미배치된 시군구 대상 53명 추가 배정

### □ 주요 업무 프로세스

